

第250回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4年11月24日(水)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위원회운영에관한건

審査된案件

1. 위원회운영에관한건 1

(14시14분 개의)

○위원장 이강래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입법조사관 전춘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관리관 나오셔서 정치관계법 개선작업 준비실태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관리관 이종우 기획관리관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무처 간부가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만, 선거관리 실무연수 참석차 지방으로 출장을 간 관계로 대신 인사를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정치관계법 개정의 건 검토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법에 있어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유권자의 참여 확대, 정책선거 구현, 선거공영제의 실효성 확보 그리고 절차사무 등의 합리적 개선 사항입니다.

둘째, 정당법으로는 정당 운영의 활성화 방안 사항,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에 있어서는 정치자금 조달의 원활화와 지출의 투명성 확보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좋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관리관 이종우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관실지도과장 김용희 지도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보고드리게 된

1. 위원회운영에관한건

(14시15분)

○위원장 이강래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운영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열게 된 것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 9월 3일 구성되었지만 국정감사 준비와 국정감사 실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제약 요인도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고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뭔가 활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각 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치관계법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다음에 향후 우리 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안을 성안해서 이후에 한두 차례 공청회를 거치고 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해서 저희 위원회 의견으로 확정을 지어서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저희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항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선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정당법, 세 번째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을 치르면서 선거비용에 관한 부분, 특히 정치자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에서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그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먼저 어깨띠 등 소품 이용 선거운동 범위 확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를 후보자 이외에는 착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법에서는 후보자 외에도 선거사무원들까지 어깨띠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만 그러한 제도들이 사람을 사서, 또 선거운동원들만 어깨띠를 메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대해 가면서 메게 하는 등의 폐단이 있다라고 해서 지난 법 개정 시에 후보자에 한정해서 어깨띠를 메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거운동의 분위기를 살리는 데 저해 요소였다는 지적이 있어서 다시 부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후보자의 가족과 선거사무 관계자에 한정해서 어깨띠를 다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밖에도 일정한 규격 범위 안에서 피켓 등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선거법에서 피켓을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베니어판에 후보 사진 등을 붙이고 각목을 대서 합동연설회장이나 야외 연설회에서 선거운동용으로 주로 활용하고 했습니다만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들끼리 충돌이 있을 때에 자칫 흥기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새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각목을 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뾰뾰한 종이나 PVC 재질을 이용해서 피켓을 만들게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밖에 선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스티커 등을 후보자나 정당 쪽에서 제작하게 하고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게 한 다음 일반 유권자들에게 배부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들고 다니게 한 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나 그런 데에 부착하게 한 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선거 분위기를……

○위원장 이강래 김용희 과장님, 아마 핵심적인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좀 간략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관실지도과장 김용희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렬·인사·연호 행위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선거사무 관계자에 한해서 행렬 등을 허용하고, 지금 똑같은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회 등의 비현실적인 제한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기간 중에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 등을 일체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모임에 한해서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표시 이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제한기간 축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선거기간 중에 일체의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 좋으나 나쁘나

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알 권리 신장을 위해서 선거일 전 6일 부터서만 공표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전 6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그때부터 부재자투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선거운동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인터넷 언론사가 규제만 있고 언론사로서의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도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운동방법 중 인터넷 광고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우편을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모바일로 선거운동 정보를 발송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완화해 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 전면 허용에 관해서는 현수막이 도로교통 등에 문제가 있고 도시 미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했습니다마는 현행은 보궐선거 등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부활하는 방안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부활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형태로 부활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라고 한다면 옛날에는 10m·1m짜리 현수막을 가로질러서 게시하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2m·1m짜리를 읍·면·동별로 후보자당 10개~20개씩 해 줌으로 해서 벽보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유권자 참여 확대 부분에서는 선거권 연령의 하향조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개정 의견에서도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안을 냈습니다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재자신고 대상자를 좀더 폭넓게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랄지 철도승무원이랄지 당일에 업무에 종사하지 않

으면 안 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 증명을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 세대 정책공약집 발송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선거공보와 소형 인쇄물로 나눠서 선거공보 한 차례 발송하고, 그다음에 소형 인쇄물을 3일 간격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고 중첩되고 있어서 차라리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정책공약집으로 만들어서 한 차례 발송하고 공공기관 등의 민원실이나 은행 등에 자유롭게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요.

이것 외에 지금 현재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고 있는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정책에 관한 사항도 일부 포함시킬 수 있는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가 때로는 유력 후보자가 빠짐으로 해서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어서 참여를 강제하는 방안도 대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영제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은 현행법에서 선거비용으로는 보고 있으면서 일체 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 대상에 들어가 있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비용으로 본다면 거기까지 다 보전해 주는 것이 실질비용에 대한 보전이 아니겠나 해서 보전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 대한 기탁금·보전비용 환수에 관해서는 새로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망이나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하는 것이 아니고 중도에 다른 선거에 출마하고자 사퇴하거나 아니면 어떤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곧 당선 무효가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직하여 보궐선거 실시 사유를 제공한 자들에 대해서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비용에 한해서는 징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사무 등의 합리적인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사무 부분은 정치적 쟁점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하면서 이제는 효율성 측

면을 따져 가지고 풀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적어 봤습니다.

먼저 선거인명부의 공람제도 폐지 및 인터넷을 이용한 열람제도 도입입니다.

지금 현재는 선거인 명부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하고 있고 또 통·반장 집을 통해서 공람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선거인명부 전체를 그런 식으로 돌리는 것이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슬롯을 통해서 자기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기 것만 딱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납세·채납 증명서 제출 범위 조정 등입니다.

공직후보자 제출 서류가 지나치게 번잡하고 많다는 지적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서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신고 대상자를 직계 존비속으로 하다 보니까 출가한 딸하고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에 대해서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외조부모나 외손자녀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를 낸 것에 대해서 세금증명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각종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이자에서 발생한 소득세까지도 다 은행마다 찾아다니면서 떼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후보자정보 공개자료가 앞으로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4대 동시선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구·시·군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후보자의 숫자가 많게는 80명에서 100명가량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정보 공개자료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 제출하게 하고 후보자 등록 시점에서 변동이 있는 사항만 고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데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정당대리인 입회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정당추천위원들이 따로 들어와 계시는데 이 외에 다시 또 정당대리인을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과정에 입회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당 쪽에서 대리인들을 거의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추천위원들을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무적으로 참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폐지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이의제기 처리 절차 마련, 그리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시 읍·면·동 단위의 개표 허용,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의 선거 사무소 선거 사무원직 승계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향후 검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현안 사항으로 부각하지는 않고 있지만 17대 대통령선거 등을 대비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언론사의 정당지지 표명 허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에서는 언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서 지명을 하지 못하도록, 언론이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언론이 명백하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유권자가 판단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부재자투표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의견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일시적 체류자에 한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외부재자투표제도가 도입된다면 해상투표제도도 도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전 투표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전 투표제도라는 것은 당해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고 투표일 현재에도 당해 선거구에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직업이랄지 어떤 이유로 해서 선거 당일에 투표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선거일 전에 자유롭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등 가까운 읍·면·동 단위에 하나 정도 설치해 놓은 투표소에 가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별로 선거비용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경험을 하셨겠지만 지난 번에 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기획비용인데

요. 홍보물 등의 기획비용의 경우에는 천차만별로 많게는 4000만 원까지 청구한 분이 있는가 하면 한 50%가량은 기획비용에 대해서 영(零)원으로 선거비용을 청구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현행법에서는 실제로 쓴 것이라면 전액 다 보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전해야 맞지만 또 국고를 가지고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믿고 전액 보전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중가격이 들쭉날쭉하고 추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중가격을 어느 정도 내 가지고 사전에 공시함으로 해서 그 이상 쓴 것에 대해서는 보전을 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선거가 끝나면 실제로 쓴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다 보전한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전액 보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당비용으로 쓴 비용들도 있고 또 개중에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비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컨대 대표적인 것이 선거사무소 임차·유지비용이랄지 그런 비용들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선거비용으로 보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선거비용으로 끌어들이고 보전도 해 주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군·구장협의회에서도 저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가지고 의견을 확정해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정당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당이 폐지되었습니다마는 각 당이 저마다 당원협의회다, 또 다른 명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구당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옛날과 같은 지구당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인키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구·시·군 단위의 당원협의회나 혹은 구·시·군 당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부활하게끔 하고, 다만 이러한 정당조직체가 다시 부활되었을 때 옛날과 같이 돈 먹는

하마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특정인이 의사결정을 독점한다든지 아니면 운영 예산을 특정인이 혼자서 다 부담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장치를 두고자 합니다.

유급 사무직원 수를 자율적으로 각 정당이 운영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도 당 유급 사무직원 수를 일률적으로 5명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시·도 당에도 5명이고 서울 같은 당에도 5명인데 그것을 현실에 맞게 각 정당이 알아서 배정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회 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지방의원 선거의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정치자금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인·단체의 선관위를 통한 기탁금 허용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회사 등 법인의 경우에 정치자금의 기부가 일체 금지되고 있고 노동단체 등 단체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허용해 주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학계 등의 의견을 좀더 들어 가지고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많이 확보됐습니다만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봐서 한두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비 납부에 대해서 한도액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수억 내지 수십억을 낸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더라도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고액 당비에 따른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정치활동비용에 대해서 공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단체가 나서 가지고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단체의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고 끌어들이는다면, 즉 지금의 후보자 팬클럽을 활성화시켜서 장차

선거운동 조직으로 가져가게 한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김용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길 위원** 확실치는 않겠지만 선관위가 언제까지 초안을 만들 예정으로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관리관 이종우**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검토가 되면 외부검증 과정을 거치고, 내부적으로 자문회의 과정을 거치고, 위원회에 보고해서 확정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연말까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김기현 위원님!

○**김기현 위원** 2페이지에 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확대’라고 해서 예비후보자가 둘 수 있는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도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법에 의하면 예비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배우자는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관리관 이종우** 예.

○**김기현 위원**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하고 잘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편은 나가서 운동하는데 배우자는 아무것도 못한 채 가만있으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한번 해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관리관 이종우** 저희들도 개정방안을 하면서 지난 3월 12일에 개정된 정치관계법의 입법 취지는 그대로 살리면서 현실하고 괴리되는 부분 쪽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검토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입은 열고 돈은 묶는 방식이 큰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운동 방법을 폭넓게 인정하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하고 투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동방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은 의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안을 만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관리관 이종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기정 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고 방송토론회에 불참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후보자 중에 과태료 물고 만다는 생각들을 하시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과태료보다 좀더 분명한 패널티가 없을까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관실지도과장 김용희** 여기에 표현은 다 안 했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이러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내용을 대담·토론회가 방영되기 직전에 방영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노회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회찬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과 관련된 연구나 사전 검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관실지도과장 김용희** 지금 충분히 연구하고 있고요. 연구 성과는 저희 의견을 제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만 합의해 주신다면 저희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미 위원** 절차사무 등의 합리적 개선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것만 검토되고 있는 것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관실지도과장 김용희** 아닙니다.

○**김선미 위원**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지금 지적된 것들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관실지도과장 김용희** 예, 추가로 의견을 주시면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 자식들, 중학교나 이런 군대와 아직 관계없는 아이들 것까지 미리 내야 되거든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것을 떼기 위해서 중간에 나와서 서류를 제출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중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군에 관계되는 서류를 떼 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의 합리적 개선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관실지도과장 김용**

희 예.

○위원장 이강래 구논회 위원님!

○구논회 위원 나중에 어차피 얘기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성안작업을 할 때…… 지금 과장님이 일어나셨으니까 혹시 과장님, 5년 동안 체납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관실지도과장 김용희 과태료 체납……

○구논회 위원 체납이 무엇인지 아세요, 국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관실지도과장 김용희 체납은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논회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시지요? 그렇게 이해하면서 ‘체납’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체하여서 납부하였음’이거든요. 사실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소득세 약 3000만 원을 한 달을 연체해서 납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이 ‘체납’이라고 해서 선거기간 동안 한 10%를 까먹었어요.

지금 일반인들은 아직도 ‘체납’을 안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어를 고쳐야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관실지도과장 김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논의하실 때……

○구논회 위원 ‘지체납부’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관실지도과장 김용희 죽 미납해 오던 분이 공직선거에 나간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한꺼번에 내면 전액 납부한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체납’이라고 해서 상황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구논회 위원 그 얘기도 알고 저 얘기도 다 아는데 용어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체납’은 일반인들이 알 때는 지금까지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한 달 연체한 사람이나 어떻게 하다가 우체통에 있어서 하루 못 낸 사람이나 ‘체납’ 해 버리니까 완전히 도둑놈 되어 버렸어요. 용어를 바꿔야 돼요.

○위원장 이강래 최철국 위원님!

○최철국 위원 거기에 관련되어서, 저도 공무원을 계속했는데 나중에 선관위에서 ‘체납했다. 한 건 체납이다’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데는 1000원

건은 안 나오는 데도 있고 또 한 건만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손해를 봤어요.

저는 낸다고 다 냈는데 어떻게 행정착오나 사무착오로 1000원 안 낸 것을 가지고 ‘체납 1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진짜 고의적으로 안 낸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백원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원우 위원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여기에 보고가 안 되었는데,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벌금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복권제를 한다든지, 저는 복권제가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은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 외에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관리관 이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자위 상임위에서 대체토론이라든지 정책질의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논의되고 국감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한 내년 예산안도 일부 증액된 상태로 상임위에서 내려갔는데요, 현재도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연구를 선관위가 하시나요,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주셔서 하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관실지도과장 김용희 현재 선관위 내부에 전문연구팀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있고요.

○백원우 위원 그것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관실지도과장 김용희 예, 그것만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어려운 점,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 패널티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가 굉장히 못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정치권이 잘 해야지 국민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느냐 해서 많이 얻어맞았어요.

○백원우 위원 복권제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관실지도과장 김용희 복권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복권제는 우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있고 그것 외에도 어떠한 것을 거느냐에 따라서 투표에 참여하는 연령대라든지 참여하는 분들의 성향이 각각 다르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별로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서 도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이것저것을 다 종합해서 끌어간다고 한다면 각 정파 간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에 구애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원우 위원 예, 연구하시는 중간 중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관실지도과장 김윙희 예.

○위원장 이강래 다른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중앙선관위에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당에서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치개혁안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준비된 것이 있으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비공식적인 간사 간 협의를 몇 번 했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11월 중순까지는 각 당에서 일단 잠정적인 안이라도 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니까 민노당에서 제일 먼저 제출했고 열린우리당이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아직 마련이 덜 된 측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먼저 열린우리당의 유시민 위원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유시민 위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열린우리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정개특에 임할 것인가 해서, 정리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의견이 너무 노출되면 곤란할 것 같아서 다소 뭉뚱그려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대체로 어떤 고민을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가를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짚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당의 정치관계법 개정의 목표는 다섯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인 참여 확대의 선거문화 정착, 두 번째는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및 참정권의 확대, 세 번째는 정치자금 조성의 기회 균등 및 현실화, 네 번째는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배분 및 선거공영제 확대, 다섯 번째는 참여정치 활성화를 위한 현대적 정당

시스템 이렇게 해서 정치관계3법을 이런 목표 아래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분야별 과제로 설정한 것은 우선 공직선거법에서는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야겠다고 해서 세부내용은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자유와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유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선거운동방법에 관해서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되어 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선거운동방법을 폭넓게 허용하는 쪽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거법 중 선거운동방법의 규제에 관해서 82조에서 112조인가요? 80몇 조부터 110몇 조까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뒤섞여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것과 어떤 것은 된다 이렇게 뒤섞여 있어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모호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거 치러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온갖 것에 관해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되고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것이 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수많은 법률적 쟁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판사들조차도 내용을 잘 몰라서 재판과정에서 선관위에 다시 문의하는, 이런 식의 일이 되풀이 되고 있어서 안 되는 것은 명료하게 법규정에서 안 되도록 하고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다 열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선거법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두 번째 사항은 기회균등 보장인데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예비후보자 사이에 상당히 심각한 차별이 선거법에 담겨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것도 그렇고 정치헌금 모금에 관해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는 문제, 그다음에 비용이 들지 않는 인터넷이나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쓸 경우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쪽의 활동 폭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쟁점은 참정권 확대에 관한 것인데요.

선거연령에 관해서는 이미 16대 때 한 차례 논의 있었습니까마는 열린우리당은 원래 18세로 내리는 것이 당론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 폭넓게 선거연령의 하향조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재자투표 대상과 부재자투표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참정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도 조금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지방자치 행정의 자율성 보장과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느냐의 여부가 지난 16대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다가 이 문제가 좀 의견이 엇갈려서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17대 국회에서 논의하자 이런 얘기가 오가면서 손을 보지 않은 채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한번 다시 모아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쟁점이 선거구제 문제인데요.

저희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선거구제 도입,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정당정치이고 우리가 대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 정당이 정치의 중심에 있는데 정당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 국회의 의석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약점을 우리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국민의 뜻이, 정당에 대한 지지가 국회의 정당별 의석구조, 의석비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했습니다.

그다음 정치자금법에 관해서는, 지금 정치자금 모금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모금 주체의 확대 여부 문제, 저희는 좀 넓게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을 1억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모으는 방법에 규제가 많아서 실제로 잘 못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쉽게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공영제 확대에 관해서는 몇 가지 사소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여기에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 당 간의 이해관계가 좀 갈라지는데요. 이것이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역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은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에 맞게 조정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 국회 특위에서 논의할 교섭단체 기준 완화 문제와 아울러서 함께 정개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가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인데요.

이게 지출항목이 좀 불확실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출하시는 데 애로사항을 느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수입과 지출 모두 투명하게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주는 쪽으로 법을 손봐야 한다는 것이 저희 쪽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당법에 대해서는 지난 16대 정개특위에서 법정 지구당을 폐지한 이후에 시·도당 이하 정당의 지역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각 당이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지구당을 못 만들게 하는 것을 헌법 위반이라고 해서 제소해 놓은 정당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과거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이 지배하고 있던 지구당 제도를 폐지한 취지를 살리는 쪽의 지역 차원의 정당활동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정당법에 그 기초를 놓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쪽의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정당법에 규정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헌법의 논리에 비추어서 정당은 상향식으로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당법 관련규정을 손을 봐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정당 운영이 가능하고 또 필수적으로 되게끔 유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토론해야 될 주제들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세부 쟁점에 대해서…… 저희 당 쪽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보조를 맞추어서 모든 정당들이 준비될 때 저희도 함께 제출할 생각으로 지금 연구 검토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 여러 다른 당 소속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래 유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 한나라당 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형준 위원 먼저 저희 정치개혁특위가 아직 실질적으로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치개혁특위만큼은 어떤 당리당략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문화를 제대로 바꾸고 또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여야 간에 합의정신이 존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개혁특위가 다른 특위나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정말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여러 번 논의를 하고 저희가 의원님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각 문제에 대한 아이터మ్은 정리해 놓고 있지만 어떤 하나의 대안을 갖고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선 제기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은 좀 열어 놓고 여러 좋은 의견들을 들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오늘 듣고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방향하고 선관위에서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다만 내용적으로는 앞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이터మ్ 자체는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다만 이런 아이터మ్들을 저희가 이번에 고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특히 선거운동 방법의 구체화라든지 방법 개선 그리고 연령 조정 또 장기 거주 외국인의 문제 또 여론조사 공표기간 또 케이블TV 토론 등등 이런 것들로 저희가 조금 구체화해서 아이터మ్들을 잡아 봤고요.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에서도 아마 여야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자칫 잘못 다루면 국회 바깥에서 상당히 개악한 것처럼 비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도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는 요구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기까지는 상당히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보다는 정치자금 운영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

고 법인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또 후원회 제도의 개선 또 선거비용을 항목별 상한선으로 개선하는 문제 또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홍보 문제 이런 것들을 넣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정당법에 있어서도 여기서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정책 정당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당법이 되어야 되겠다는 데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지역단위 정책활동의 기반을 마련한다든지 원내 정당화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의 개정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터మ్으로 받아 봤고 또 지구당 체제가 해체된 이후에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운영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지역 정치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래 박형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노당 안을 보니까 아이터మ్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냥 아이터మ్만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회찬 위원 위원장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앞의 2페이지만 간략하게 요약설명하고 뒤의 것은 문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당론이기는 하나 지금 여러 당에서 의견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우선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점차 좁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의가 그대로 의석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와 같이 선거구의 도·농 간 인구 편차가 3분의 1까지 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개선되었으나 이것은 2분의 1로 다시 한걸음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 안에 두는 것이 여러 오해를 살 수 있고 또 그간에 폐단도 있었기 때문에 좀더 중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성당원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만 명 300만

명씩 되는 페이지 당원들은 고비용 정치의 구조적 요인이 되기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을 소액 당비 납부율과 연계하는 매칭펀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도 이런 진성당원제를 보편화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참정권 보장 및 확대와 관련해서 18세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낮추는 것과 선거운동이 금지된 직종과 관련한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자투표제 실시는 여러 찬반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뜻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께서도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무엇보다 투표율을 높이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전자투표제 실시라고 보고 전자투표제 실시는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행정의 의미도 있고 또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법이 만들어지고 실시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그것을 다시 개정하는 문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노회찬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위원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낙연 위원 문건은 차기 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의제는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대안은 차차 제시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16대 총선거 직전에 당시의 비정상적인 분위기하에서 비현실적인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도입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닥쳐있고 2006년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래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신 것처럼 지금 중앙선거위를 포함해서 각 당에서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에서 구체적으로 뭘 어떤 것을 원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개략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충 모아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관위에서는 연말까지 안을 내겠다고 그랬습시다마는 서둘러 만들어서 안을 보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각 당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각 당의 안을 만들어서 바로 제출을 해 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우리 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차례입니다.

위원장으로서의 현재 각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표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공청회를 열어서 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우리 위원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개혁협의회'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청회 개최와 정치개혁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건에 관해서……

○박형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강래 박형준 위원님!

○박형준 위원 공청회는 어쨌든 한 번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12월 중에 공청회를 한 번 하자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치개혁협의회 문제도 그동안 간사 간 회의나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고 또 저희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논의를 했는데요.

지난번 범개혁처럼 어떤 상당한 권한과 강제성을 갖는 협의회가 아니라 진짜 순수 자문기구로서 그리고 바깥의 전문가들과 여러 사회 영역에 계신 분들의 고견을 저희가 수용한다는 차원의 순수 자문기구로서의 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 한나라당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추진을 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유시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강래 유시민 위원님!

○유시민 위원 존경하는 박형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16대 말 정개특위 위원으로 있어서 그 당시 분위기를 직접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범개혁이 자칫, 16대 말 당시에 정말 일종의 포퓰리즘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범개혁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국회 의장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그 위상에 맞도록 우

리 위원회가 결의해서 의장께 구성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그 인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정당 간사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모두가 원만하게 만족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되도록 한다는 합의정신 위에서 의장께 요청하는 결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청회에 관해서는 일단 12월 중순 정도가 적합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은 각당의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진단과 어떤 제안을 우리 특위 차원에서 한번 수렴해 본다 이런 취지의 공청회를 한번 해서 발제는 주로 밖에서 하고 의견 표명은 정개특위 위원들께서도 참여하셔서 조금 하실 수 있도록 이런 형식의 공청회를 특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강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양당 간사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청회 건은 12월 중순경으로 일단 간사간 협의에 의해서 날짜를 결정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형식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갖고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치개혁협의회에 대해서는 지난번 16대 국회 말미의 범개혁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교훈을 거울삼아서 초당파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특위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개혁협의회는 형식적으로는 국회의장 자문기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님과도 이 문제를 상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양당 간사 그리고 민노당 민주당 다 함께 논의에 참여해서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위원장과 간사들께 일임해 주십시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논의하려고 합니다. 지난 9월 3일

회의에서 우리가 소위원회 구성을 하기는 했는데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명단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선거법소위원회 열 분, 정치자금법소위원회 여섯 분, 정당법소위원회 네 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전에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각 소위에서 그때 그때 호선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관해서 원칙만 여기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6대 국회 당시에는 각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두지 않고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소위원회 사회를 주재했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여기에서 각 소위별로 위원장을 선출할 것인지 아니면 16대 관례처럼 호선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들 없으십니까?

고흥길 위원님!

○고흥길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게 민주적이고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일 추진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리고 이게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다 끝나야 되는데 3개 소위 위원장은 여야가 하나씩 맡고 나머지는 기타 단체에다 맡긴다든가 무소속, 민주당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아주 결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간사 간에 서로 협의를 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고흥길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시면 저희가 적절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시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시민 위원 오늘 기자분들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금 와 계시고,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정개특위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등등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이루어진 것이야 그대로 보도가 나갈 텐데 앞으로 여야 관계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혹은 내년 초까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이

혹여 만에 하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파행이 또 국회 전체 차원에서 벌어질 경우에 대개 보면 상임위, 특위까지 다 파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 주십사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정당 간의 다툼 때문에 국회 전체가 파행에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예정하고 있는 공청회라든가 각종 회의, 소위원회 등등은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셔서 그런 풍파와 무관하게 우리 정개특위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뜻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모으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오늘 당장 그렇게 하자는 것은 꼭 아니고 한번 그런 취지를 모을 수 있을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이강래 유시민 위원님께서 위원장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나치려고 합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出席委員(14人)

강기정	고홍길	구논회	김기현
김선미	노회찬	문병호	박형준
백원우	유시민	이강래	이명규
이인기	최철국		

○請暇委員(2人)

권오을 이화영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전문위원	김종현

○政府側參席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관리관	이종우
선거관리관실장	김용희
지도과장	

【報告事項】

○議案回附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이계진 의원 대표발의)

(9월10일 고진화·김영숙·김영춘·김우남·김정훈·문학진·박세환·박재완·배일도·심재덕·이강두·이계진·이군현·이근식·이인기·이해봉·정몽준·정문헌·진수희·허천·허태열 의원 발의)

9월14일 회부됨

政治資金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9월23일 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9월24일 회부됨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10월11일 고진화·권오을·권철현·김명주·김형오·맹형규·박승환·박형준·안경률·안명옥·안홍준·원희룡·유기준·유승민·이성권·정문헌·정화원·정병국·주호영·진수희·진영·최구식 의원 발의)

10월12일 회부됨

政治資金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11월10일 강창일·김기석·김덕규·김명주·김부겸·김영춘·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태년·김현미·김형주·노영민·노웅래·문학진·민병두·서갑원·서재관·송영길·신기남·신중식·양형일·오영식·우상호·우원식·원혜영·유기홍·유선호·이기우·이목희·이은영·이인영·이호웅·정청래 의원 발의)

11월11일 회부됨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

(11월12일 고정화·고홍길·권영세·김기현·김맹곤·김문수·김석준·김애실·김재경·김재원·김재윤·김정훈·박계동·박성범·박순자·박종근·박창달·박혁규·배일도·송영선·이군현·이명규·이상득·이인기·이재오·이해봉·임태희·장복심·정문헌·최병국·허천·홍문표·홍준표·황진하 의원 발의)

11월15일 회부됨